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오 현 석**

-
- I. 서 론
 - II.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기준
 - III. 물품의 계약적합성 판정시기
 - IV. 물품의 계약부적합과 통지
 - V. 결 론
-

주제어 : 매매계약, 계약적합성, 계약부적합, 물품의 검사시기, 계약부적합 통지

I. 서 론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상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물품수령 및 대금지급의무이다. 특히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써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물품검사와 통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계약의 원만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법으로 자리 잡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E-Mail : peter@daegu.ac.kr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고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적합성 결여'(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CISG는 물품이 계약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책임으로써 물품의 하자뿐만 아니라 수량의 부족도 통상 부적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CISG가 법계간 통일의 타협물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달리 각국의 상이한 국내법체계¹⁾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²⁾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계약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당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매도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부적합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ISG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ISG 제35조에서는 먼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을 시작으로 제36조에서는 물품의 손상시기, 제38조에서는 물품의 검사시기, 제39조에서는 계약의 부적합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로는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한국 민법을 비교·분석한 오호철(2005),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관해 분석한 오원석·민주희(2012),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와 구제방법을 분석한 홍성규(2014), CISG상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시도한 김봉수(2014), 매도인의 물품부적합의무를 법리적으로 해석한 김동호(2014) 등이 있다.³⁾ 이들 선행연구가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법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 1) 각 국가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①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은 후 단기간 안에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②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기 전 물품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하고 그 결과로 계약은 취소되는 국가, ③ 부적합에 대해 세부적 요건 없이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를 요구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가별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에 대한 판결이 달라 질 수 있다(Eric E. Emeritus Bergsten, CISG-AC Opinion No.2,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ce of Non-Conformity; Article 38 and 39, 7 June 2004; 박은옥, "CISG상의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판례연구", 통상법률 제96호, 법무부, 2010, pp. 141~142).
- 2) 우리나라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권리의 하자과 물건의 하자에 의한 담보책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CISG의 계약 적합성은 국내법상의 하자의 개념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p. 301).
- 3) 오호철,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민법개정안의 비교", 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 오원석·민주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2;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김봉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동아법학 제62호, 동아

연구된 반면 본 연구는 CISG의 권리의 계약적합성은 제외하고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당해 주제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기준

1. 물품의 계약적합성

CISG 제35조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 판단기준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동조 제(1)에서는 계약상 합의에 따른 물품의 명시적 계약적합성 기준을, 제(2)에서는 계약상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객관적 계약적합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물품의 명시적 또는 객관적 계약적합성에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물품의 부적합 인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⁴⁾

1) 물품의 명시적 계약적합성

물품의 명시적 계약적합성은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적합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CISG 제35조(1)은 매도인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물품을 포장하여 인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을 강조하고 있다. 당해 규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의 명시적 계약적합성이라고 해서 계약의 목시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CISG 제9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관습과 통상적 관행이 계약에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장거리 운송 중의 감량, 대량계약에서의 오차 발생 등의 이유로 계약상 일정범위의 과부족은 관습과 관행에서 허용되고 있다. 예컨대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b)⁵⁾에서는 산화물(*bulk cargo*)의 경우 신용장방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김동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에 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4) Enderlein, Fritz, and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p. 120.

식에 의한 거래에 한하여 당사자가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5%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⁶⁾

둘째, 수량, 품질, 명세, 용기, 포장 등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과 행동은 CISG 제8조(3)에 따라 그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된 모든 사항’이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교환된 기타 서류, 계약과 관련된 제3자가 교부한 서류, 매도인의 홍보자료 및 계약 이전에 행해진 사전교섭 등이 해당된다.⁷⁾

셋째, CISG 제35조(1)은 용기 및 포장을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국가의 국내법에서 용기와 포장을 ‘부수적 의무위반’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써 용기 및 포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점이 특징적이다. 만약 당사자가 용기 및 포장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CISG는 그 용기 및 포장이 물품의 보존 및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용기 및 포장으로 타인 또는 타물품에 훼손을 입히지 않을 목적, 물품의 브랜드 이미지 달성목적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포장의 목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용기 및 포장의 당사자 합의사항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⁸⁾

2) 물품의 객관적 계약적합성

물품의 객관적 계약적합성은 당사자가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말한다. CISG 제35조(2)에서는 물품의 객관적 계약적합성에 대해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은 계약부적합으로 본다.

첫째, 당사자가 품질에 대해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이와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 합의한다. 그러나 물품의 품질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물품은 통상사용목적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상사용목적의 기준이 해당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컨대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경우 판매적격

5) UCP 30조(b), 신용장에서 포장단위나 개별품목의 규정된 수량조건에 대한 수량표시가 없고 어음의 총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품수량보다 5% 초과 또는 5% 부족의 범위를 넘지 않은 차액은 허용된다.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 139.

7) 오수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p. 402.

8) 오수용, 상계논문, pp. 406~407.

품질로 해결될 수 있지만 물품이 최종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판매적격품질로 해결될 수 없다.⁹⁾ 또한 품질의 기준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정이 다른 경우 어느 국가의 규정을 따를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통상사용목적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사안별 사실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의 관습과 관행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¹⁰⁾

둘째, 당사자가 물품의 특정품질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특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력(skill)과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를 신뢰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기술력의 격차가 있는 경우 또는 양당사자가 동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CISG 제35(2)(b)가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의 다수설은 당사자간 기술력의 격차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조항을 따른다. 동설은 당해조항의 단서규정¹¹⁾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더 나은 기술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¹²⁾ 한편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의 특정한 목적을 알았고 또한 물품이 동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매수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추정적 사건(prima facie case)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신의 기술력이나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¹³⁾

셋째,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을 제시한 경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은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견본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할 것을 명시적으로 담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결과 견본계약은 CISG 제35조(1)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넷째, 당사자가 포장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포장에 대한 ‘적절한 방법’(usual manner)

9) Kroll 교수는 통상적 사용에 대한 기준을 물품의 속성, 그 특징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 해당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광고, 홍보, 해당 물품의 특징에 대한 제조업자의 설명, 물품의 가격, 물품의 사용지역, 업계의 관행 등으로 제시했다(오수용, 전계논문, p. 410).

10)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제2권, 삼성사, 2004, pp. 329~330.

11)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석광현, 전계서, p. 142.

13) 오원석, 전계역, p. 332.

14) 견본 또는 모형에 의한 계약적합성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는 CISG 제35조(2)(c)를 적용하고 있지만 CISG와 달리 매수인이 견본 또는 모형을 제시한 경우 당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Austria; 11 September 1995; unilex 6 R 194/95).

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¹⁵⁾에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이는 CISG 제35조(2)(a)의 통상적 사용이나 계약의 일반적인 해석규칙과도 관계된다.¹⁶⁾ 따라서 당해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관행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의 목적으로써 운송중 물품의 적절한 보호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매도인의 면책

CISG 제35조(3)에 의하면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관한 전항(2)의 객관적 계약부적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본 조항은 CISG 제35조(1)에 의해 ‘계약에서 요구되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모를 수 없었던 경우’(could not have been unaware)는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매도인이 검사기회를 제공했고 그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그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데 대해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면책되는 것이다.¹⁷⁾ 다만 CISG 제35조(3)의 면책은 제35조(2)의 계약부적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제35조(1)의 의무를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¹⁸⁾

2. 사례¹⁹⁾

1) 사실관계

중국의 매수인과 미국의 매도인은 1990년 2월 선로(track)의 레일 제조에 필요한 4천톤 상당의 프레스기(4,000 ton rail press)를 매매하는데 합의하였다. 이후 계약에서 정한 사양에 따라 프레스기는 조립 및 시험을 완료하였고 중국으로 운송을 위

15) *packaging for biscuits case*의 경우 포장의 합리적 기대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에서 재판매될 것임을 알고 있고 매수인 국가의 법이 포장에 성분과 유효기간이 표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포장은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판례도 있다(France 13 December 1995 Appellate Court Paris; CLOUT No.203).

16) 오원석, 전계역, p. 334.

17) 오수용, 전계논문, p. 419.

18) 이는 CISG 제79조의 면책의 사유로서 장애(impediment)의 요건 중 예견불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즉 장애의 발생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다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당하자는 그러한 장애가 현실화될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19) *Beijing Light Automobile Co., Ltd. v. Connell Limited Partnership*,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Award of 5 June 1998(<http://cisgw3.law.pace.edu/cases/980605s5.html>).

해 분해되어 1992년 3월 중국 천진항을 통하여 북경 매수인의 공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1993년 1월 프레스기는 재조립되어 매수인은 가동을 개시했고 약 3년 동안 프레스기는 고장이 없었지만, 1995년 11월에 고장으로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에 매수인은 프레스기의 수리를 위한 기술자 파견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에서 기술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술자 파견을 거절하였다. 매수인은 중국의 기술자를 통하여 프레스기를 수리하고 1996년 8월 재가동을 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프레스기의 고장은 물품의 하자라 주장하며 1997년 2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프레스기의 고장원인은 좌측 중간 기어·샤프트 위의 p-52 연결판의 파손 때문이었다. p-52 연결판은 A-5750키와 비슷하지만 설계 시 당해 고장원인인 좌측 중간 기어·샤프트의 연결판 용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매수인의 수리요청에 대한 매도인의 거절로 중국 국내 기술자가 잘못 조립하였던 것이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품교체 또는 연결판의 설치방법에 관해 연락하지 않았으며, 매수인의 계속되는 수리요청에 매도인의 종업원이 매수인의 공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프레스기의 수리는 끝나 있었고 매도인의 종업원도 연결판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2) 판정

중재법정은 p-52 연결판 설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과 매수인에 의해 부적절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A-5750키 고정기구로부터 p-52 연결판으로의 변경이 프레스기에 잠재적인 위험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로 연결판 파손에 대해 매수인의 설치 또는 유지에 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재법정은 이러한 사실에 의해 프레스기가 계약의 적합성 결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계약상 쟁점이 되고 있는 프레스기의 품질에 관해서는 ‘당해 물품이 최고의 재료와 일류 기술에 의해 제조된 신제품으로 중고가 아닐 것’을 보증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에 중재법정은 본 계약과 같이 계약의 보증조항에서 품질의 일반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용어로 정했을 뿐이라면 CISG 제35조(1)의 묵시적 적합성 요건을 배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중재법정은 p-52의 특성이나 성능, 매도인에 의한 설치에 관한 설명이나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매수인의 프레스기 설치에 관한 상황에 관한 논의를 근거로 프레스기는 당해 부품에 관하여 CISG에 의거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기준에 미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재법정은 부적절한 설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연결판의

고장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p-52 부품은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또한 프레스기가 심각한 고장 없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재법정은 A-5750키 고정부품 대신에 p-52 연결판을 사용한 결과로서 프레스기가 계약에 부적합하였다고 판정하였다.

3. 검토

본 사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프레스기에 대해 계약상 품질적합성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점의 핵심이다. 먼저 당사자가 품질조건을 ‘당해 물품이 최고의 재료와 일류 기술에 의해 제조된 신제품으로 중고가 아닐 것’으로만 합의하였고 이러한 품질합의가 프레스기의 구체적 품질을 설명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CISG는 임의규정으로서 CISG 제12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다.²⁰⁾ 그런데 본 사례는 품질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으므로 CISG 제35조(1)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품질의 명세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규정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 결국 중재 판정부에서도 판정하였듯이 본 사례는 CISG 제35조(2)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본 사례를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계약서상 보증기간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CISG 제39(2)의 제척기간²¹⁾도 경과한 약 3년의 시점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교섭단계에서 당해 프레스기는 30년 이상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던 점, 매수인의 프레스기 수리에 대한 요청을 매도인이 거절한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 장기간 고장 없이 사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프레스기를 구매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도인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사례는 CISG 제35조(1)이 품질의 명시적 합의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20) CISG 제6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CISG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21)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 판정시기

1. 물품의 손상시기 및 검사시기

1) 물품의 손상시기

CISG 제36조는 물품의 손상이 계약부적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물품의 손상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개별적 효력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CISG는 물품의 손상에 따른 기준시기의 일반원칙과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기준시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손상시기에 대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관하여 계약 및 본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지며, 이는 비록 부적합이 위험의 이전시점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마찬가지다. 통상 위험의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Incoterms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만,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숨은 하자까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위험이 이전하였더라도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둘째, 물품의 계약부적합이 위험이전 시점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매도인의 의무위반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물품이 통상적인 목적 또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이나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물품의 손상에 따른 기준시기의 일반원칙의 예외로써 당해기준 후에 발생한 계약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와 물품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계약부적합이 위험이전 시에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즉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 시 계약부적합을 지적하거나 또는 CISG 제39조에 따라 부적합통지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런 이의 없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부적합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²²⁾

2) 물품의 검사시기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검사시기는 그 시기에 따라 다른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²³⁾ 예컨대 부적합의 발견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못한다면 CISG 제39조(1)에 의해 매수인은 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고, 매도인의 계약위반 시점으로부터 합리적 기간이 지난 후에는 CISG 제49조(2)(b)에 의해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의 검사시기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했어야 했던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시기에 따라 다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²⁴⁾

CISG 제38조는 물품의 검사시기를 매수인의 신속한 물품검사의 원칙과 검사시기의 연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수인은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검사 의무는 CISG 제39조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의 필수적 전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매수인은 CISG 제39조(1)에서 규정된 물품 부적합에 따른 통지를 위해서 CISG 제38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매수인의 물품의 검사에서 ‘당해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within as short period as is practicable)라는 시점에 관련하여 논쟁이 있다. 이는 CISG 제71조(3)의 ‘즉시’(immediately)보다는 유연한 개념이나 ‘합리적 기간 내’(reasonable time)보다는 엄격한 개념인데, 그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종류, 성질, 인도의 규모, 포장방법, 거래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 대행물품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및 기타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²⁵⁾ 결국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검사시기는 개별상황을 고려한 사실의 문제로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²⁶⁾

22) 석광현, 전게서, p. 146.

23)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Kunsthaus Math. Lempertz v. Wilhelmina van der Geld* (Netherlands 17 July 1997 District Court Arnhem) 사례의 경우 매도인이 특정 화가의 그림을 인도할 때 그 그림이 특정 화가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은 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이는 매수인이 물품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인도시기와 검사시기가 결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24) 오원석, 전게역, p. 348.

25)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67; 허광욱, “CISG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 기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pp. 29~31.

26) CISG 제38조(1)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빨리 파악하게 하여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할 경우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eter Huber & Alastair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둘째,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물품 검사는 물품이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통상 물품의 인도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따라서 CISG 제38조(2)의 물품검사의 연기는 실제 매수인이 선적지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²⁷⁾

한편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에 목적지의 변경 및 전매하여 전송이 되는 경우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물품의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연기를 위해서는 매도인이 목적지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은 포장이 미리 개봉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다.²⁸⁾

2. 사례²⁹⁾

1) 사실관계

캐나다 매수인과 미국 매도인은 2001년 3월 수량 1,350상자(수량 40,500파운드), 금액 178,200달러, 지불기한은 화물도착 후 7일의 조건으로 돼지갈비(pork ribs)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계약조건으로서 제품의 설명, 가격, 집하일과 장소가 규정되었다. 계약 유효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매도인의 원료구입처에서는 돼지를 해체처리 후 수평으로 30파운드 씩 들어가는 상자에 넣어 급속 냉동 후 야외 냉동고에서 출하 시까지 보관하였다. 원료구입처는 자사 냉동고 외에 다른 2개사의 냉동고에 보관하였고, 자사 냉동고의 온도 로그 및 품질관리기록에 따르면 제품은 수송온도에서 적정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제시된 기록에 의하면 외부 1개사에 위탁보관된 돼지갈비의 경우 수송온도에서 보관되었으나, 다른 1개 회사는 당사자로부터의 증거 제시가 없었다.

2001년 4월 24일 운송인은 매수인의 대리로서 원료구입처에서 40,500파운드의 돼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 148).

27) 그러나 *Cocoa beans case*의 경우 운송을 포함한 물품의 인도로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의 검사를 수행할지라도 운송을 위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이후에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부적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Switzerland 15 January 1998 Appellate Court Lugano, Cantone del Ticino; CLOUT No.253).

28)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설출판사, 2000, p. 141.

29)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United States 28 May 2003 Federal District Court(<http://cisgw3.law.pace.edu/cases/030528u1.html>).

지갈비를 수령하였으며, ‘외형은 양호’하다는 내용과 부지약관(contents and condition of contents of packages unknown)이 포함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다음날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였고 매수인 역시 물품 수령시 물품의 ‘외형은 양호’함을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써 인정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매수인은 돼지갈비의 가공도중 돼지갈비의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미국 농무부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당해 돼지갈비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매수인은 돼지갈비의 가공처리를 종료하고 냉동고에 보관을 하였다. 미국 농무부검사관의 현장검사는 계속되었고 그 중 문제가 되는 상자에서는 부패되어 녹색으로 변색된 돼지갈비가 발견되었다. 문제는 매도인이 다수의 원료구입처로부터 조달받은 돼지갈비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판결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CISG 하에서는 계약상의 보증위반의 입증책임은 매수인 측에 있음에도 매수인은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불량이 위험이전시에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묵시적인 상품적합성 보증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대금지불 유보를 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본 사례는 매매의 대상이 된 물품의 품질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지만, 매수인이 위험이전 시기에 물품검사를 해대한 경우에 해당된다. 본 판결은 CISG하에서 계약 위반으로서의 품질문제에 대한 묵시의 계약보증 의무위반의 입증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물품검사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실행되어야 할 시기의 판정 및 그 실시 유무에 관하여도 확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당해 사례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물품의 계약적합성 판단시기는 위험의 이전시기 이며 또한 검사결과 물품에 계약부적합이 발견된 경우에도 거래의 기대이익을 상실할 정도의 근본적 위반이 아닌 한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법적구제를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

1.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의무(39조)

1) 합리적 기간 내의 부적합 통지

CISG 제39조(1)은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부적합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했어야 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당해 부적합의 내용이 포함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수인의 부적합통지를 위해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계약부적합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에는 당해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부적합통지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신속한 증거의 확보, 조치할 보정 수단을 고려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부적합의 특징이나 성격의 지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⁰⁾ 다만 단순한 이의제기는 부적합 내용의 특정성이 결여된 바 부적합통지로서 인정되지 못한다.

둘째,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에 대한 개시는 CISG 제38조에 따라 매수인이 검사를 통하여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했어야 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또한 매수인이 검사를 통하여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검사에 연이어 통지의 의무가 개시된다. 그러나 검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의 경우는 그 상황에 비추어 개시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매수인의 검사 후 매도인에게 인도된 기계제품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 하자의 발견시점이 매수인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의 개시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숨은 하자에 대한 부적합의 통지 시점은 당사자의 보증합의 시점 또는 2년의 제척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간을 넘은 통지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셋째, 매수인은 부적합통지를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기간이란 일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실의 문제이다.³¹⁾ 예컨대 물품의 성질, 영업상황, 하자의 성질, 기타 외부적 상황, 인적 상황 등을 고려

30) 강병창, 전개서, p. 142.

31) *Sport clothing case*의 경우 의류매매에서 부족한 수량은 잠재적 하자가 아니므로 1~2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에도 일주일 이상 지나서 통지하는 것은 합리적 기간을 벗어났다고 판정하였다(Germany 5 April 1995 District Court Landshut).

하여야 할 것이다.³²⁾

넷째, 매수인이 부적합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³³⁾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부적합통지의 해태에 대한 제재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CISG 제44조가 원용되고 있다.³⁴⁾ 즉 매수인이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2) 부적합통지에 대한 제척기간

CISG 제39조(2)에서는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에 대한 2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간에 보증기간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물품이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당해 조항은 물품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매수인에게 다소 가혹한 조항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매도인의 경우 물품인도 후 시간의 경과로 매도인이 인도당시의 물품의 상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혹은 매도인이 자기에게 재료나 물품을 공급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데도 곤란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양당사자의 주장을 타협하기 위해 2년의 제척기간에 대한 개시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다.³⁵⁾

한편 부적합통지에 대한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그 결과 양당사자가 합의한 보증기간과 제척기간이 양립할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한 보증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물품의 특수성 및 당사자의 물품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증기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2) 석광현, 전계서, p. 156.

3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은 매수인의 이행청구권(대체물 인도청구권, 부적합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34) CISG 제39조(1)는 개발도상국의 수입업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적합 통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수인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로 CISG 제44조를 삽입하게 되었다 (Alejandro M. Garro, "Reconciliation of legal traditions in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3,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1989, pp. 443~445).

35) 오원석, 전계역, pp. 360~361.

2. 사례³⁶⁾

1) 사실관계

이탈리아 유리병 제조업자인 매도인과 스위스 술병 유통업자인 매수인은 유리병으로 장기거래를 하였다. 1995년 12월 매도인은 48,729,390 *Itf* 상당액의 와인병(wine bottles)을 매수인으로부터 수주하여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분할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3번째 출하분이 계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대금지불을 거절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의 루가노(Lugano) 사법재판부는 1995년에 수주되어 1996년에 걸쳐서 출시된 것의 일부는 불량품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러한 불량품의 문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계처리된 계산서를 제시한 것이라 판정하였다. 또한 그 상계처리된 계산서 중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적시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CISG 제3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하급심이 CISG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하였다.

2) 판결

항소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먼저 CISG 제39조(1)의 해석에 동조(2)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급심의 CISG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수인의 지적에 반해 CISG 제39조(2)는 동조(1)을 수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ISG 제39조의 통지에는 매수인에 의해 물품의 인도·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의 하자를 통지하면 매수인의 보증조건상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매도인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도인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본 사안에서 당사자의 일반거래협정서 제201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제품 인도로부터 통상의 상거래 상황에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제품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계약부적합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 장소에 납입된 하자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매도인 측의 현실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일반거래협정서 제7조에는 제품불만에 대한 통지는 제품수령 후 8일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매도인 측의 이익이 되는

36) *Wine bottle case*, Court of Appeal Switzerland 8 June 1999 Ticino Appellate Court Lugano (<http://cisgw3.law.pace.edu/cases/990608s1.html>); CLOUT No. 336.

것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CISG 제3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매수인이 계약에서 정한 8일을 지나서 통지한다면,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지불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당해 통지는 적당한 시기를 놓쳤던 바로 직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통지의 내용은 요구되는 계약부적합의 본질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반하지 않았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3. 검토

본 판례의 논점은 매수인이 계약상의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상실하는가에 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물품의 계약부적합의 통지를 합리적 기간에 했는지 여부와, 계약 부적합에 대한 통지 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ISG하에서는 매수인에 의한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이행여부만으로도 판결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CISG의 적용 여부를 넘어서 계약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한 매수인의 과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³⁷⁾

예컨대 계약의 성립의 요건으로서 승낙의 통지 등과 같은 상품의 계약부적합 이외의 통지에 대해서는 통지의 지연 또는 불도달의 경우 CISG 제27조³⁸⁾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 제27조는 상황으로부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도달이 되었을 경우, 그 통지를 실시한 측의 당사자가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서 행동을 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CISG는 통지한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부적합의 경우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CISG 제39조의 통지에는 매도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의 인도수령거부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 재이행이나 대용품 납입이라고 하는 대체행위를 발생시키는 기초 정보로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

37)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에 있어 부적합 내용이면 족하고 달리 피해범위,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Potatoes Case*의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햇감자를 인도받은 후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액을 합의된 기간을 초과하여 통지하였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기간 위반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정하였다(Slovak Republic 24 February 2009, District Court in Komarno).

38) CISG 제27조는 협약 제3편(물품의 매매)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계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하며, 적시에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이 누리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제39조(2)의 2년의 제척기간은 동조(1)의 합리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CISG는 매도인의 의무 중 물품의 하자에 관한 의무를 계약의 적합성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CISG 제35조에서는 계약의 적합성 판단기준을 당사자 합의에 기한 명시적 기준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기준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계약적합성에 대해 합의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통상적 사용 목적, 특정목적, 견본 또는 모형의 품질을 보유, 통상적 방법의 포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지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된다. 요컨대 계약 적합성은 당사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합리적 방법 또는 개별 매매의 특성을 고려한 사실의 문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Beijing Light Automobile Co., Ltd. v. Connell Limited Partnership 사례의 경우 논점은 계약으로 물품의 품질을 일반적으로 정함으로써 CISG에 규정된 묵시적 계약 적합성 기준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본 사례는 매도인이 계약서에 단순히 품질보증의 책임에 대해 CISG와 다른 조건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CISG의 묵시적 계약적합성 기준 즉 객관적기준이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매도인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제공한 경우 물품의 손상시기에 대한 판단문제가 있다. CISG 제36조에서는 물품의 손상시기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물품의 손상시기에 대한 일반원칙과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기준시기의 확장으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 물품의 계약 부적합의 판단시기를 위험의 이전시기로 보고 있으며, 후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숨은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물품에 대해 보증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계약 부적합의 판단시기는 확장된다.

한편 매수인의 물품 검사시기에 대해서도 CISG 제38조에서는 원칙적 검사시기와 검사시기의 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칙적 검사시기는 매수인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의 검사를 의미한다. 짧은 기간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당해 거래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 사실의 문제로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에 물품의 운송을 포함한 경우, 운송 중 전매하여 전송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실제로 물품검사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검사시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사례는 매수인이 위험이 전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 매수인에 의한 지불거절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본 사례는 비록 매도인이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매수인이 계약부적합에 대한 검사를 해태한 경우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CISG 제38조는 제39조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의무와 관련이 있다. 즉 매수인은 물품을 위험의 이전시기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CISG 제35조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해 부적합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통지의 기간이 해당될 것이다. 통지의 개시시점은 매수인이 부적합에 대해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또는 숨은 하자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또는 보증기간 및 2년의 제척기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을 넘어서 통지는 매수인의 해태로서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부적합 통지의 해태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이익의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Wine bottle case*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된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기한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CISG 제39조는 계약부적합의 통지기간과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만약 당사자가 통지기간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기간이 우선한다. 즉 당해 조항은 통지기간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매수인은 물품의 검사의무가 있으므로 물품의 인도 후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이 계약상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기간을 당사자 간에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무계에서는 계약부적합에 대한 통지기간을 넘어 매수인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장병창, 국제통일매매법, 형설출판사, 2000.
- 김동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에 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 김봉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동아법학 제6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민주희, “CISG상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박은옥, “CISG상의 물품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관한 판례연구“, 통상법률 제96호, 법무부, 2010.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오수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 오원석 역,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 오원석·민주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7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2.
- 오호철,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민법개정안의 비교”, 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
-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 허광욱, “CISG 제39조 제1항의 ‘합리적 기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 Alejandro M. Garro, “Reconciliation of legal traditions in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International Lawyer*, Vol. 23, No2, American Bar Association, 1989.
- Eric E. Emeritus Bergsten, CISG-AC Opinion No.2,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ce of Non-Conformity; Article 38 and 39, 7 June 2004.

Enderlein, Fritz, and Dietrich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Peter Huber & Alastair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International Sale

Hyon-Sok O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implication about conformity of good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 are so many legal relationship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most of important thing among the obligations of seller is to provide conformal goods which are of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f seller violate above duties, seller take the warranty liability. However, CISG describe the conformity of the goods instead of the warranty as follows.

First, CISG Art.35(1) stat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and Art.35(2) describes standards relating to the goods' quality, function and packaging that, while not mandatory, are presumed to be a part of sales contracts. Article 35(2) is comprised of four subparts. Two of the subparts (article 35(2) (a) and article 35(2)(d)) apply to all contract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econd, CISG Art.36 and 38 deals with the time at which a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must have arisen in order for the seller to be liable for it. If seller lack of conformity becomes apparent only after that time, seller is liable for a lack of conformity existing when risk passed to the buyer.

Third, CISG Art.49 describe that a buyer who claims that delivered goods do not conform to the contract has an obligation to give the seller notice of the lack of conformity.

The most of important things about CISG articles and precedents is that buyer is awar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notice it to seller. Failure to satisfy the notice requirements of article 39 eliminates a buyer's defence, based on a lack of conformity in delivered goods, to a seller's claim for payment of the price. Consequently, parties of contract had better agree to the notifying times about

46 무역상무연구 제66권

lack of conformity. Also, If seller find the non-conformity, seller has to notify this circumstance to the buyer within short period or agreed time.

Keywords : Sales Contract, Conformity for the Goods,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Examination Time of Goods, Notifying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